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시의결

안 건 번 호 제2023-006-057호

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3. 6. 28.

주 문

- 1.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 과 태 료 : 7,2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2.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 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명)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22. 2. 14.)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22. 7. 19. ~ '22. 11. 8.)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등의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2. 7. 26. 기준으로 이용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 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 정보			
합 계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인지·대응 내용				
'22. 2. 11.(금)	10:40	콜센터 1:1 채팅상담을 통해 로그인 오류 관련 민원* 접수 * 이용자A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화면을 캡처하여 채팅창에 송부				
	17:05	이용자A가 ************ 홈페이지 이용 중에 이용자 B의 개인정보를 확인 하였다는 내용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여 해당 기자가 콜센터로 문의				
	18:01	콜센터에서 채팅상담 및 언론사 문의 내용을 IT 등 관련 부서로 발송				
100 0 14 (SI)	8:30경	IT부서에서 채팅상담 및 언론사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한 확인작업 진행				
'22. 2. 14.(월)	22:35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				
'22. 2. 15.	-	이용자A, B의 로그인 기록 상세 분석을 통해 세션 오류로 추정되는 유출 원인 확인				
22. 2. 13.	18:42	이용자B에게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 안내(유선)				
'22. 2. 16.	10:38	유사 사례 발생 여부 및 세션 취약점 패치 정보 확인				
22. 2. 10.	17:08	이용자B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메일)				
'22. 2. 17.	19:30	세션 취약점 패치 적용				
'22. 2. 23	15:54	개인정보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내용 정정				

2)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1명의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가 유출되었다.

3) 유출 경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JEUS(제우스) 7 Fix4' 버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JEUS Session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세션 오류가발생하였고,

* 이미 발표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발견된 사소한 기능 개선 또는 버그나 오류 등을 수정하기 위해 개발자(개발 회사)가 내놓는 업데이트 프로그램

세션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 A가 비슷한 시간대에 접속한 이용자 B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공개('20.7.9.)한 세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2. 2. 11. 10:40에 콜센터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유출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18:01에 IT 등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고,

* 민원인 A는 1:1 채팅 상담 시,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B의 개인정보가 조회되었던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하였고, 상담원은 '관련 내용이 전산팀에 처리 요청된 상태'라고 답변함

IT부서가 해당 내용을 ^①2. 14. 8:30경 확인 후 같은 날 22:35에 유출 신고하고, ^②2. 15. 18:42에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11. 2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2. 5.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 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 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적용 등 취약점 개선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피심인이 '22. 2. 11. 10:40에 콜센터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보호법 §29	§48의2① 제2호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보호법 §39의4①	§48조의4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제12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각각 6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피심인은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現보호법 제29조에 해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22. 4. 13.)을 받았으나, 본 사건의 경우 과태료 처분 전에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22.2월)되었으므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을 적용함

< 보호법 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한다)을 신고하지	조의4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고한 경우	법 제75조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고,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는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대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별표1]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및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총 7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행위(세부내용)	기준금액	가중액	감경액	최종 과태료
안전조치의무 (접근통제)	600만 원	60만원	300만원	360만원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통지·신고 지연)	600만 원	60만원	300만원	360만원
계				720만원

2. 결과 공표

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2020. 11. 18.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조(공표요건)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보호법 제7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제4호)' 및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제5호)'에 해당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순번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			
명칭		위반조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1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360만원			
	법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	2023. 6. 28.	과태료 부과 360만원			
	순번 1	순번 한 자	순번한 자명칭위반조항법 제29조법 제39조의4	한 자 위반행위의 대용 명칭 위반조항 위반대용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법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한 자 위반행위의 대용 행정서문 명칭 위반조항 위반대용 처분일자 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법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2023. 6. 28.		

2023년 6월 28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제12호의3, 제66조(결과의 공표)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대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대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대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대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대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6월 28일

위원장 고학수 (서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강정화 (서명) 위 원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위 원 이희정 (서명) 지성우 (서명) 위 원